

[업무 연락]

제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전자관보 제19656호(2019.12.26.)와 관련입니다.

2. "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령"이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자동차의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람 중 취업일까지 무사고로

운전한 사람은 3년이 경과 하더라도 다시 신규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

내용 (시행일 : 2019.12.26.)

나.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

대응방법 추가하는 내용 (시행일 : 2020.05.27.)

붙 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끝]

2020. 01. 02.

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